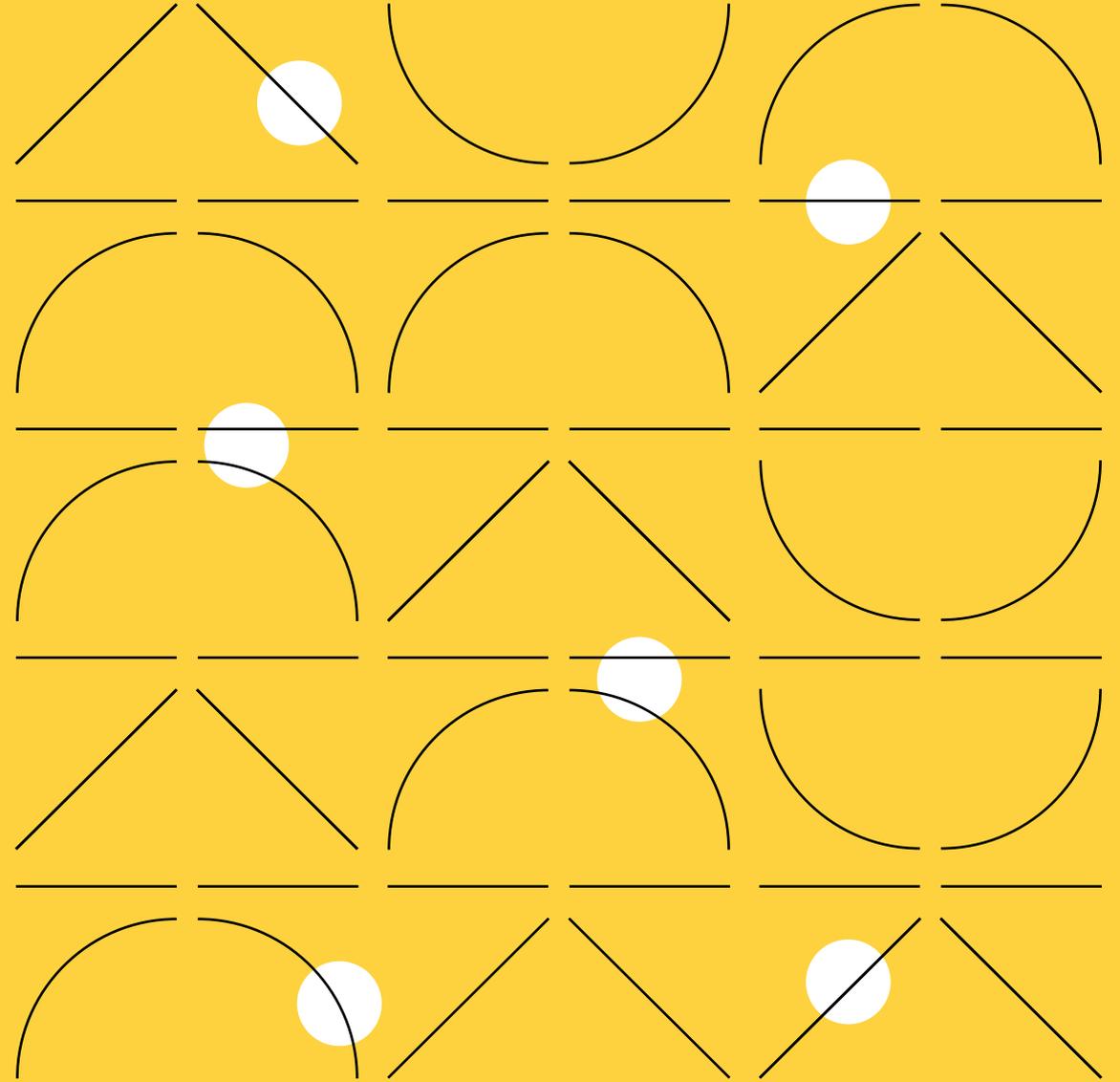


고객이 신뢰하는 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Top Tier 시험인증기관

Katri >

Better Future to You in Children's Products



www.katri.re.kr

어린이제품

Katri >

1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제도

- KATRI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07년 3월 국내 섬유기관 중 최초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제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관리 품목 및 분류

*KATRI 가능품목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제품 | 제품 검사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 4개 품목 | 16개 품목 | 14개 품목 + a |
| ①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② 어린이용 비비탄총* ③ 어린이 놀이기구 ④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① 유아용(36개월 미만) 섬유제품* ② 완구* ③ 학용품* ④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⑤ 보행기* ⑥ 유모차* ⑦ 유아용 침대* ⑧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별로 포함)* ⑨ 유아용 캐리어* ⑩ 유아용 의자* ⑪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⑫ 어린이용 이단침대 ⑬ 유아용 삼륜차 ⑭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⑮ 어린이용 자전거 ⑯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① 아동용(36개월 이상) 섬유제품* ② 어린이용 가죽제품* ③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④ 어린이용 물안경* 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키보드* ⑧ 어린이용 가구* ⑨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⑩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⑪ 어린이용 스키용구 ⑫ 어린이용 스노보드 ⑬ 쇼핑카드 부속품 ⑭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기타 어린이제품* (개별안전기준은 없으나 공통안전 기준을 따르는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제외 대상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제품
- 일반용도 제품(전 연령대상 제품),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 제품
- 타법에서 관리하는 품목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화장품법 | 식품위생법 | 관광진흥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 •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 제2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 •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 •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위해도에 따른 제품 분류 및 절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해도 | 구분 | 마크 | 진행 절차 |
|--------------------|------------|--|---|
| 높음 ↑ ↓ 낮음 | ① 안전인증 |  (안전인증번호) | 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인증기관) → 인증 → 판매 |
| | ② 안전확인 |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 | 제품시험 (시험·검사기관) → 신고 → 판매 |
|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  | 제품시험 (자체확인 또는 제3자기관) → 성적서 또는 확인서 구비 → 판매 |

처벌기준

벌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벌칙)

| |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 |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 | 규정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 |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 |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자 |
|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 | 안전인증,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

어린이 제품 시험검사 및 인증

안전확인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별 '모델의 구분'에 따라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추가적인 시험(유해물질 또는 역학시험)을 행한 후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합니다.
 - ▶ KATRI 동일모델확인 업무와 연계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정의) 및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등의 동일모델 확인)]

진행 절차

- 신고 절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 | |
|------------------------------|---|
| 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¹ • 검사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택배, 퀵 접수 • 접수증(인증수수료) E-MAIL 발송 • 시험·검사 검사수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는 의뢰신청 접수 후 납부해야 함 |
| ② 접수 | |
| ③ 시험·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시험항목, 시료보완 등에 따라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 |
| ④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검사 결과서 발급(적합시 안전확인신고 진행) • E-MAIL 발송 |
| ⑤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소요 •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포함) • 제품검사 결과서 • 안전확인 신고 수수료 발생 |
| ⑥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교부 | - |

※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안전확인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함

- 추가시험 절차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등의 동일모델 확인) 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동일모델 추가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 | |
|-----------------------------|---|
| 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² • 검사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택배, 퀵 접수 • 접수증(인증수수료) E-MAIL 발송 • 시험·검사 검사수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는 의뢰신청 접수 후 납부해야 함 |
| ② 접수 | |
| ③ 시험·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시험항목, 시료보완 등에 따라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 |
| ④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검사 결과서 발급(적합시 안전확인신고 진행) • E-MAIL 발송 |

※ 추가시험의 합격 시 동일모델의 인증번호사용

구비서류¹

- 안전확인 신고
-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용도: 안전확인신고용)
-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확인서(해당시)
 - 제조업자 확인서
 - 재시험 확인서
 - 액체포함 완구
 - 방부제 확인서
 - MSDS 자료 확인서
 - 1차전지 포함 완구 (단추형 전지 포함)
 - KC 인증확인 서류
 - 2차전지 포함 완구
 - 2차전지 확인서, 표시사항
 - 2차전지 성적서 및 사양서
- ⑤ 안전확인 신고서
- 안전확인 재신고
(기존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던 안전인증기관에서만 재신고 가능)
-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용도: 재신고용)
-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확인서(해당시)
- ⑤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 (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구비서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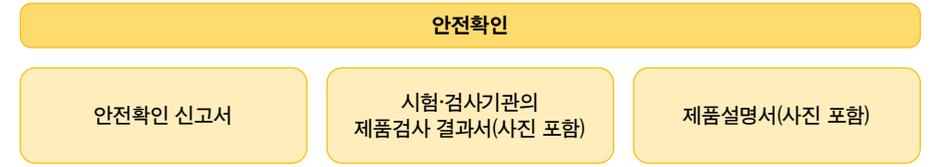
- 안전확인 추가시험
-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용도: 추가시험용)
-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 ③ 확인서(해당시)
 - 재시험 확인서
 - 액체포함 완구
 - 방부제 확인서
 - MSDS 자료 확인서
 - 1차전지 포함 완구 (단추형 전지 포함)
 - KC 인증확인 서류
 - 2차전지 포함 완구
 - 2차전지 확인서, 표시사항
 - 2차전지 성적서 및 사양서
- ④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 (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관련 서류 비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및 동법 제43조(과태료)



안전확인 URL



※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진행 절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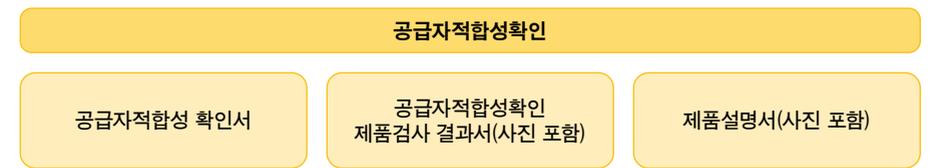
| ① 시험검사 의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분석신청서 • 의뢰할 시료(원단, 완제품, 부자재 등)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택배, 퀵 접수 | | | | | | | | |
|-----------------|---|-----|-----------|-----|-----------|----|----|----|----|
| ②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증 E-MAIL 발송 • 시험 수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는 의뢰신청 접수 후 납부해야 함 | | | | | | | | |
| ③ 시험 진행 | <table border="1"> <thead> <tr> <th>보통</th> <th>지급</th> <th>초지급</th> <th>당일 (일부시험)</th> </tr> </thead> <tbody> <tr> <td>5일</td> <td>3일</td> <td>2일</td> <td>당일</td> </tr> </tbody> </table> <p>※일부 시험 항목의 경우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p> | 보통 | 지급 | 초지급 | 당일 (일부시험) | 5일 | 3일 | 2일 | 당일 |
| 보통 | 지급 | 초지급 | 당일 (일부시험) | | | | | | |
| 5일 | 3일 | 2일 | 당일 | | | | | | |
| ④ 성적서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결과서 발급 • E-MAIL 발송 | | | | | | | | |
| ⑤ 성적서 수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 택배(착불), 퀵(착불), 방문수령 등 | | | | | | | | |
| ⑥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비치 | - | | | | | | | | |

관련 서류 비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및 동법 제43조(과태료)



공급자적합성확인 URL



※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KATRI 수행업무

구비서류¹

- 사전통관신청서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사진 포함)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PACKING LIST
- INVOICE



사전통관확인 URL

구비서류²

-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사진 포함)
- 검사 성적서
- ※ 동일모델의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제품검사 결과서가 반드시 필요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PACKING LIST
- INVOICE



동일모델확인 URL

사전통관확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신고 또는 품목검사를 위하여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

진행 절차

| | |
|--------------------------------|---|
| ① 사용자등록 |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 ②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 |
| ③ 요건 신청 | • KATRI시험연구원 서식 |
| ④ 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작성 | • 구비서류 ¹ |
| ⑤ 서류검토 및 사전통관 확인(KATRI시험연구원) | - |
| ⑥ 승인 |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
| ⑦ 세관물품 반출 | •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검용)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

동일모델확인(요건신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등의 동일모델 확인)

진행 절차

| | |
|--------------------------------|---|
| ① 사용자등록 |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 ②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 |
| ③ 요건 신청 | • KATRI연구원 서식 |
| ④ 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작성 | • 구비서류 ² |
| ⑤ 서류검토 및 동일모델 확인(KATRI시험연구원) | - |
| ⑥ 승인 |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
| ⑦ 세관물품 반출 | •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검용)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

※ 동일모델확인(요건신청)은 사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던 안전인증기관에서 진행 가능

안전성조사

-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이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구입·조사하여 제품 인증 당시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등) 및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진행 절차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며,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권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 | | | |
|-------------------------|---|------------|----------------|
| ① 시중 유통 중인 제품 구매 | 안전성조사 중점관리품목은 매년 초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 |
| ②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진행 | 안전성조사기관을 통한 시험·검사 진행 | | |
| ③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안) 사전 통지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한함)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안전성조사 결과를 통보 ▶ 부적합 내용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 | | |
| ④ 사업자 이의신청 | 청문회 및 의견제출서 자료 제출 • 약 2주간의 소명기간 동안 의견제출서 제출(청문회, 재시험 신청 가능) • 재시험 진행시 최초 안전성조사기관과 제3의 안전성조사기관에서 각각 재시험·검사 진행(재시험·검사 결과 모두 적합인 경우 행정조치 제외) | | |
| ⑤ 처분확정 | 수거등의 명령 | 수거등의 권고 | 개선조치 권고 |
| ⑥ 언론공표 및 처분통지 | 교환·환불·수리 등, 언론 등 공표 | 교환·환불·수리 등 | 부적합 사항 개선 후 출고 |
| ⑦ 행정이행 | | | |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함

어린이제품 인증관리 디지털 서비스

- KATRI는 어린이제품의 <접수-발급-인증-동일모델 관리-요건 신청> 업무에 대하여 ONE-STOP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 | |
|---|---|
| ① 접수내역 확인 | ② 시험·검사 결과 확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상태 확인 • 완료예정일 확인 • 수수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서 클릭없이 판정결과 확인 • 성적서 확인 • 부적합 결과 보고서 제공 • 어린이제품 인증정보 바로 가기 |

| | |
|--|---|
| ③ 어린이제품 인증정보 확인 | ④ 요건 신청(동일모델 확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만료 알림 • 5년간의 인증정보 조회 가능 • 동일모델 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 바로 가기 <p>※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신청 구비서류 생성(안전확인신고 확인증/제품설명서/성적서) • 요건신청 담당자 이메일 자동 발송 • 관세청(UNI-PASS) 사이트 바로 가기 <p>※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 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p> |



어린이제품 인증관리 디지털 서비스 URL